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26 선고 2022가단3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천

변 론 종 결 2023. 5. 22.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4/79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208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4/79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40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 E, F, G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였는데, F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9. 12. 3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08058호로 1979. 9.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2021. 3.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40173호로 202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B는 F 및 H의 친자가 아님에도, 피고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父)가 F으로, 모(母)가 H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F과 H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I의 아들)와 J(F과 H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와 F 및 H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56). 위 법원은 2022. 6. 8. 피고 B와 F 및 H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2022. 7. 5. F의 제적등본에서 피고 B에 관한 기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F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권 없는 피고 B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피고 B는 설령 피고 B와 F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의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있어 피고 B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점, 피고 B는 그 소송절차에서 출생신고에 대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패소한 점, 패소판결에 대하여 피고 B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이후부터 피고 B는 F와 사이에 양친자관계의 존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피고 C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원고를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을 제4, 6, 12 내지 15, 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은 F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 B가 F 및 H 사이의 자녀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B를 비롯한 F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 지분의 매도에 관한 매각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점, 원고는 이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9. 7. 9. 법무법인 K(담당변호사 L)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 자문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변호사 L는 상속지분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C와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관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도 매매당사자 본인이자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위 매각 업무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2019. 8.경 변호사 L에게 ‘사실은 피고 B가 망 F의 자녀가 아니라 망 E의 자녀이니, 망 E의 상속인들이 피고 B 지분의 매매대금 절반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이 이를 수용하여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C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변호사 L가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 망 E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분배금을 피고 B를 제외한 망 F의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점, 원고는 2021. 5.경 피고 C와의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마쳐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C에게 용역비 청구를 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간 점, 원고는 피고 B의 자녀들과 세금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의 상속인 자격을 다투기 시작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피고 B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C 명의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민